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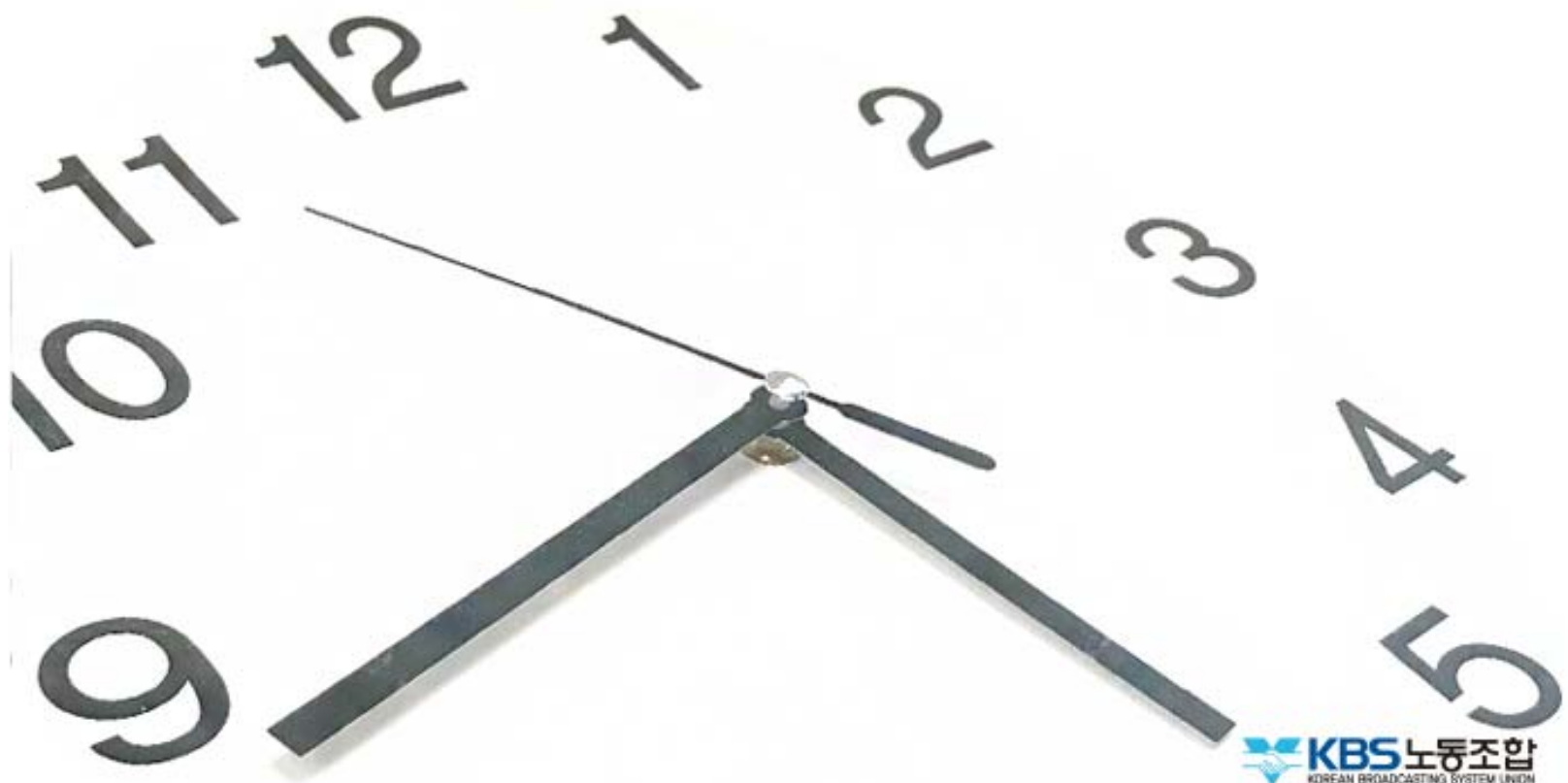
2018년 7월 1일

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

1주 최대 근로시간

52시간으로 단축

(연장, 휴일근로 포함)



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 **한국 2위**

OECD 주요국 연간근로시간(2016년 기준)



* OECD, Stats.OECD.org(임금근로자 기준)

개정 전,

하루 8시간 x 주 5일 = 40시간

휴일 근로 (토, 일) = 16시간

연장 근로 (1주) = 12시간

총 68시간

**KBS는 특례 업종으로
사실상 무제한 근로!**

개정 후,



하루 8시간 x 주 5일 = 40시간

연장 근로 (휴일근로 포함) = 12시간

총 52시간

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
노동시간 단축!



KBS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돼

2018. 7. 1. 부터 68시간 준수!

'단, 2019. 6. 30. 까지 52시간 유예'



<법 위반사>

사업주 2년 이하 징역

또는

2천만 원 이하 벌금

Q&A

Q. 주 52시간 제도 시행으로 시간외 실비가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?

A. 시간외 실비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(기본급, 상여금, 직책수당, 근속수당, 연차휴가보상수당, 특수직무수당, 가족수당, 급식보조비, 교통보조비)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Q&A

Q. 개정 후 노사간에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
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?

A. 불가합니다.

2018. 7. 1. 이후 68시간 초과 불가

2019. 7. 1. 이후 52시간 초과 불가입니다.

그래서 사측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.

Q&A

Q. 현 통상근로를 시차근로로 확대할 경우
근로자는 사측의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?

A. 시차근로는 변형근로에 해당 돼 노사합의가 필요합니다.
KBS 노동조합은 반드시 유불리를 따져 조합원들에게
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Q&A

Q. 교섭대표노조가 있어야 사측과 협상할 수 있나요?

A. 아닙니다. 교섭대표노조가 없어서 주 52시간 사안에 대응이 어렵다는 주장은 마치 "내가 좋아하는 '뽀로로 연필'이 없어서 숙제를 안 했다"는 주장과 동일합니다.
사측은 각각의 노조와 교섭을 하고 노조 사이에 '중립의무'가 있어 교섭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.

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해 노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
사측에 대응 방안을 물을 것이며

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할 것입니다.

근로자의 권익만 바라봅니다.

